
제2023-17회

중앙운영위원회

2023. 8. 15.

보 고 안 건

보고안건 제1호 총학생회장단 보고

제 출 연 월 일 2023. 8. 13.

안 건 제 출 자 총학생회장 강동재

안건 상정 근거 「학생회칙」 제56조제6호

□ 제안이유

- 「학생회칙」 제74조제2항에 따라 총학생회장단이 의결기구에 본회 및 본회 회원과 관련한 모든 사항을 보고하기 위함.

□ 주요내용

- 이석봉 대전광역시 경제과학부시장 미팅 참여
 - 일시: 8월 7일(월) 오후 3시
 - 장소: 대전광역시청 10층 경제과학부시장실
 - 참석: 이석봉 경제과학부시장, 이동현 대학원 총학생회 회장, 강동재 학부 총학생회 회장
 - 내용
 1. 대전광역시로부터 대덕특구 순환버스 시범운영(이하 특구1번 버스) 사업의 운영 연장에 대한 확답을 받고, 2023. 7. 15.~2025. 7. 14. 동안 특구 1번 버스를 연장 운영함을 확인함.
 2. 특구1번 버스의 노선에 관하여 대전광역시에서 제안한 조정안 1안, 2안에 대해 KAIST 학부 및 대학원 학생들의 반대 의견을 전달함. KAIST 학생들은 조정안(1안 및 2안) 보다 기존 노선을 선호하며 가장 필요로 하는 노선은 봉명동, 월평동, 도룡동을 경유하고 연구단지 부근 운영을 단축하는 노선임을 전달함. 다만, 연구단지 부근 단축의 경우에는 타 협의회 의견 및 특구1번 버스 사업의 도입 목적 등을 고려하였을 때에 현실적인 어려움이 존재한다는 답변을 받음.
 3. KAIST 학생들이 대전광역시를 알아갈 수 있도록 관광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하기로 함. 대전 한화생명 이글스 파크 견학 및 야구 경기 관람 등 학부·대학원 총학생회에서 학생들이 선호하는 프로그램을 전달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대전광역시에서 검토 및 추진하는 방안은 추후 미팅에서 논의하기로 함.
- 연세대학교 주관 <2023 제1회 총학생회 공동포럼> 참석
 - 일시: 8월 10일(목) 오후 2시
 - 장소: 연세대학교 동문회관 3층 대연회장
 - 참석: 연세대학교 총학생회, 고려대학교 총학생회, 서강대학교 총학생회, 한양대학교 총학생회, 이화여자대학교 총학생회, KAIST 학부 총학생회(한정현 부총학생회장, 김성원 집행지원국장, 전성원 재정사무국장, 최정흠 문화기획국장, 김세훈 사무팀원, 김민재 회계팀원, 윤영선 회계팀원, 고은서 기술경영학부 학생회장, 이돈

영 생명화학공학과 학생회장) 등

- 내용

1. 여러 대학교의 총학생회가 협력하여 학생사회 운영에 대한 성찰과 새로운 시대에 부합하는 학생사회로 혁신하기 위한 연구 및 토론을 진행함. 지역사회 발전, 사회공헌 의제를 포함하여 폭넓은 총학생회의 새로운 역할을 고민하며 총학생회 공동포럼의 출범식과 그 행사에 참여함.
2. 대학생의 생활권 의제와 청년정책 방향성 검토, 학생사회의 위기 진단, 시대적 역할, 개선 방안 등에 대한 토론이 이루어졌으며 한정현 부총학생회장이 토론 패널로 참여하여 의견을 개진함.

○ 학부·대학원 총학생회 제출 단체급식 식당 만족도 개선(안) 검토 회의 참여

- 일시: 8월 11일(금) 오전 10시

- 장소: 본관 4층 제2회의실

- 참석: 문영주 시설팀장, 김세림 고객경영팀장, 이진호 고객경영팀, 최문영 고객경영팀, 이동헌 대학원 총학생회장, 강동재 학부 총학생회장

- 내용

1. 단체급식 식당 만족도에 따른 차등 지원: 만족도 조사를 기반으로 차등 지원하여 업체간 경쟁 및 상호 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안에 대하여, 입주업체 Best Award 시상을 추진하기로 함.
2. 단체급식 식당 입찰 방식 개선: 입찰 시 다양한 업체의 지원을 유도하기 위하여 입찰 홍보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는 안에 대하여, 단체급식 식당 입찰공고 기간 연장을 추진하기로 함.
3. 구성원 대상 학식 Day 운영: 고정 식수 확보 및 단체급식 현황을 다양한 구성원 집단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학식 Day를 운영하는 안에 대하여, 행사에 큰 예산이 소요되지 않도록 안을 정비하고 유효한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유인책을 마련하기로 함.
4. 단체급식 식당 비정기 안전위생 합동점검 시행: 고객경영팀, 안전팀, 입주업체 모니터링위원회 위원이 단체급식 식당 안전위생 점검에 참여하여 조리 환경 및 식기 세척 상태 등을 모니터링하는 안을 추진하기로 함.

□ 의결문안

○ 총학생회장단 보고를 원안대로 접수한다.

보고안건 제2호 소통국제화위원회 위원장 사퇴 보고

제 출 연 월 일 2023. 8. 10.

안 건 제 출 자 소통국제화위원회 위원 조호정

안건 상정 근거 「학생회칙」 제56조제6호

제안이유

- 「학생회칙」 제58조제2항 및 제116조에 따라 전문기구장의 사퇴를 중앙운영위원회에 보고하기 위함.

주요내용

- 소통국제화위원회 위원장 직을 수행하던 조호정(19, 화학과) 학우가 학부 졸업을 사유로 2023. 7. 1. 해당 직에서 사퇴함. 위원장 사퇴를 의결한 회의에서 신임 위원장을 내부호선함.
- 위원장 사퇴 후 조호정 학우는 졸업 직전까지 소통국제화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새로 인준될 신임 위원장을 보조하는 역할을 수행할 예정임.
- 사퇴 사항

소속	직위	이름	사유
화학과	위원장	조호정	학부 졸업

사퇴 의결 확인: 붙임

의결문안

- 소통국제화위원회 위원장 사퇴 보고를 원안대로 접수한다.

사퇴를 의결한 회의체 명칭	전체회의
해당 회기의 명칭	제2023-1회 전체회의 (6월, 임시회)
해당 회기의 일시	2023. 6. 21.
안건제목	소통국제화위원회 위원장 사퇴 의결
표결결과	총원: 5명/재적: 5명 재석: 5명/찬성: 5명/반대: 0명/기권: 0명
해당 의결사항의 의사	조호정 소통국제화위원장이 사퇴 의결을 통해 위원장 직에서 사퇴함.

보고안건 제3호 소통국제화위원회 위원장 내부호선 보고

제 출 연 월 일 2023. 8. 10.

안 건 제 출 자 소통국제화위원회 위원 조호정

안건 상정 근거 「학생회칙」 제56조제6호

제안이유

- 「학생회칙」 제90조에 따라 소통국제화위원회 위원장 내부호선 결과를 중앙운영위원회에 보고하기 위함.

주요내용

- 소통국제화위원회 위원장을 수행하던 조호정(19, 화학과) 학우가 학부 졸업을 사유로 2023. 7. 1. 해당 직에서 사퇴함과 동시에 내부적으로 정시윤(20, 생명과학과) 학우가 위원장으로 단일출마하여 내부호선 됨.

의결문안

- 소통국제화위원회 위원장 내부호선 보고를 원안대로 접수한다.
-

사퇴를 의결한 회의체 명칭	전체회의
해당 회기의 명칭	제2023-1회 전체회의 (6월, 임시회)
해당 회기의 일시	2023. 6. 21.
안건제목	소통국제화위원회 위원장 내부호선
표결결과	총원: 5명/재적: 5명 재석: 5명/찬성: 5명/반대: 0명/기권: 0명
해당 의결사항의 의사	정시윤 소통국제화위원회 위원을 새로운 위원장으로 내부호선함.

심 의 안 건

심의안건 제1호 감사시행세칙 일부개정세칙안

제 출 연 월 일 2023. 8. 7.

안 건 제 출 자 중앙운영위원회 의장 한정현

안건 상정 근거 「학생회칙」 제56조제6호

□ 제안이유

- 「학생회칙」 제191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일부개정세칙안·일부개정규칙안이 발의되었을 때에 중앙운영위원회에서 일부개정세칙안·일부개정규칙안을 심의하기 위함.

□ 주요내용

○ 개정 취지

- 현행 「감사시행세칙」 제14조의 겸직금지 조항이 학우들의 감사원 위원(이하 감사위원) 참여를 저해하고 위원 모집을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라고 판단하여 감사시행세칙 일부개정을 통해 겸직금지의 범위를 조정하고 완화하기 위함.
- 위원의 수가 「감사시행세칙」 제10조에 규정된 위원의 수(8인) 보다 적어 원활한 정기회계감사 시행이 어려울 경우에 정기회계감사를 시행하는 동안 한시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임시위원을 모집하고 인준할 수 있는 회칙상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
- 2023년도 상반기 정기회계감사보고서 작성을 위한 위원 결원 보충 방안을 마련하고 확정하기 위함.

○ 주요 골자

- 「감사시행세칙」 제14조의 겸직금지 대상을 피감기관의 장으로 개정하여 위원의 자격 제한을 완화함.
- 「감사시행세칙」 제10조2를 신설해 임시위원의 모집, 자격, 역할에 대해 규정하여 임시위원 모집하고 인준할 수 있는 회칙상의 근거를 마련함.

□ 감사시행세칙 일부개정세칙안: 별첨1

□ 감사시행세칙 일부개정세칙안 신규조문대비표: 별첨2

□ 감사시행세칙 개정 경위 및 목적: 별첨3

□ 참고사항

○ 관련 규정

■ 감사시행세칙

제9조(구성)

감사원은 감사원장을 포함한 4인 이상 8인 이하의 감사위원으로 구성한다.

제10조(위원)

1. 감사위원 후보자는 본회 정회원 중 감사원의 추천을 통해 모집하며 후보자는 전학대회에서 인준한다. 단, 후보자가 2명 ~ 4명 이상일 경우에는 감사

원 내부 심의를 통해 후보자를 2명 ~ 4명으로 압축한다.

2. 감사위원 4명 ~ 8명 중 2명 ~ 4명은 봄학기 초 정기 전학대회에서 인준하며, 나머지 2명 ~ 4명은 가을학기 초 정기 전학대회에서 인준한다.
3. 감사위원을 총원해야 하는 상황일 시, 감사원은 전학대회 종료 후 부족한 인원을 총원하고 이를 다음 전학대회에서 서면의결 형식으로 인준한다. 감사원을 총원할 상황은 감사원 내부 논의로 판단한다.
4. 감사위원 사퇴 시, 다음 전학대회에서 사퇴 일시와 함께 서면으로 보고한다. 만약 감사원장이 사퇴했다면 새로운 감사원장을 내부에서 호선하고 함께 보고한다.

제11조(감사원장)

1. 감사원장은 감사원을 대표하고 그 사무를 관리·감독한다.
2. 감사원장은 감사원 내부에서 호선하고 전학대회에 보고한다.

제12조(임기 및 신분보장)

1. 감사위원의 임기는 인준된 전학대회부터 다음연도 동일한 학기의 정기 전학대회까지로 한다.
2. 감사위원은 임기만료나 사퇴·해임에 의하지 않고는 그 직을 상실하지 않는다.

제14조(겸직 금지)

감사위원은 재직 중 피감기관의 대표와 위원 및 총회를 제외한 의결기관 구성원을 겸직할 수 없다. 단, 새내기학생회 새내기학생대표자회의와 동아리연합회 동아리대표자회의의 대의원은 예외로 둔다.

의결문안

- 감사시행세칙 일부개정세칙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한다.
-

논 의 안 건

논의안건 제1호 2023년도 상반기 중앙회계 분배 논의안

제 출 연 월 일 2023. 8. 15.
 안 건 제 출 자 부총학생회장 한정현
 안건 상정 근거 「학생회칙」 제56조제6호

- 제안이유
 - 「학생회칙」 제58조제2항에 따라 중앙운영위원회에서 기구별 중앙회계 지원을 심의하고 조정하여 중앙회계를 배분하기 위함.
- 주요내용
 - 중앙회계 지원 대상 기구 중 2023년도 하반기에 중앙회계 지원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기구를 대상으로 2023년도 하반기 실행예산요구서를 제출받아 기구별로 필요한 중앙회계 지원금 규모를 파악함.
 - 2023년도 하반기 단체별 중앙회계 지원금 신청 금액의 총액이 예상 학생회비 수입에 따른 중앙회계 금액을 초과하여 기구별 미팅을 통해 감축안을 논의함.
 - 2023. 8. 10.~2023. 8. 15. 동안 기구별 미팅을 진행한 결과에 따라 다음과 같이 2023년도 하반기 중앙회계 분배안을 제안함.
- 2023년도 상반기 중앙회계 분배안

학생회비 수입	₩58,000,000
중앙회계 비율	60.00%

구 분	중앙회계 지원금 신청 금액	학생회비 수입 대비 비율	예년에 준하는 예산 규모			
			'18~'22 평균 (최근 5년)	'18~'19 평균 (코로나19 이전)	'20 (코로나19 당해)	'21~'22
의결기구	₩12,215,000	21.06%	1.92%	3.68%	1.00%	0.17%
중앙집행위원회	₩5,317,400	9.17%	20.61%	26.33%	22.03%	12.03%
동아리연합회	₩918,000	1.58%	1.53%	2.20%	0.00%	1.88%
학생복지위원회	₩1,220,600	2.10%	0.00%	0.00%	0.00%	0.00%
행사준비위원회 운영비	₩0	0.00%	1.11%	1.61%	1.56%	0.39%
학생문화공간위원회	₩790,000	1.36%	2.35%	5.21%	0.00%	0.66%
행사준비위원회 축제 지원금	₩5,446,980	8.62%	23.68%	21.26%	20.88%	27.49%
감사원	₩443,000	0.76%	0.53%	0.92%	0.65%	0.07%
문화자치위원회	₩0	0.00%	0.18%	0.44%	0.00%	0.00%
소통국제화위원회	₩0	0.00%	0.10%	0.07%	0.00%	0.17%
학생·소수자인권위원회	₩600,000	1.03%	0.45%	1.12%	0.00%	0.00%
G-inK	₩1,099,020	1.89%	1.12%	1.29%	0.00%	1.50%

KAIST 글로벌학생봉사단	₩0	0.00%	0.00%	0.00%	0.00%	0.00%
VOK	₩850,000	1.47%	1.75%	0.76%	5.21%	1.00%
ELKA	₩0	0.00%	0.10%	0.23%	0.00%	0.00%
SPARCS	₩400,000	0.69%	0.72%	1.23%	0.00%	0.56%
2023년도 상반기에 집행한 이월금	₩5,500,000	9.48%	-%	-%	-%	-%
계	₩34,800,000	60.00%				

	당해년도 예산
수입	₩34,800,000
지출	₩34,800,000
잔액	₩0

□ 2023년도 하반기 중앙회계 분배안 보고서: 불임

1. 중앙회계 분배 가이드라인

구분	예년에 준하는 예산 규모			
	'18~'22 평균 (최근 5년)	'18~'19 (코로나19 이전)	'20 (코로나19 당해)	'21~'22
의결기구	1.92%	3.68%	1.00%	0.17%
중앙집행위원회	20.61%	26.33%	22.03%	12.03%
동아리연합회	1.53%	2.20%	0.00%	1.88%
학생복지위원회	0.00%	0.00%	0.00%	0.00%
행사준비위원회 운영비	1.11%	1.61%	1.56%	0.39%
학생문화공간위원회	2.35%	5.21%	0.00%	0.66%
행사준비위원회 축제 지원금	23.68%	21.26%	20.88%	27.49%
감사원	0.53%	0.92%	0.65%	0.07%
문화자치위원회	0.18%	0.44%	0.00%	0.00%
소통국제화위원회	0.10%	0.07%	0.00%	0.17%
학생·소수자인권위원회	0.45%	1.12%	0.00%	0.00%
G-inK	1.12%	1.29%	0.00%	1.50%
KAIST 글로벌학생봉사단	0.00%	0.00%	0.00%	0.00%
VOK	1.75%	0.76%	5.21%	1.00%
ELKA	0.10%	0.23%	0.00%	0.00%
SPARCS	0.72%	1.23%	0.00%	0.56%

*의결기구의 경우에는 선거관리위원회 예산을 포함하지 아니함.

2. 2023년도 하반기 중앙회계 분배안

구분	중앙회계 지원금 신청 금액	학생회비 수입 대비 비율	예년에 준하는 예산 규모			
			'18~'22 평균 (최근 5년)	'18~'19 (코로나19 이전)	'20 (코로나19 당해)	'21~'22
의결기구	₩12,215,000	21.06%	1.92%	3.68%	1.00%	0.17%
중앙집행위원회	₩5,317,400	9.17%	20.61%	26.33%	22.03%	12.03%

동아리연합회	₩918,000	1.58%	1.53%	2.20%	0.00%	1.88%
학생복지위원회	₩1,220,600	2.10%	0.00%	0.00%	0.00%	0.00%
행사준비위원회 운영비	₩0	0.00%	1.11%	1.61%	1.56%	0.39%
학생문화공간위원회	₩790,000	1.36%	2.35%	5.21%	0.00%	0.66%
행사준비위원회 축제 지원금	₩5,446,980	8.62%	23.68%	21.26%	20.88%	27.49%
감사원	₩443,000	0.76%	0.53%	0.92%	0.65%	0.07%
문화자치위원회	₩0	0.00%	0.18%	0.44%	0.00%	0.00%
소통국제화위원회	₩0	0.00%	0.10%	0.07%	0.00%	0.17%
학생소수자인권위원회	₩600,000	1.03%	0.45%	1.12%	0.00%	0.00%
G-inK	₩1,099,020	1.89%	1.12%	1.29%	0.00%	1.50%
KAIST 글로벌 학생봉사단	₩0	0.00%	0.00%	0.00%	0.00%	0.00%
VOK	₩850,000	1.47%	1.75%	0.76%	5.21%	1.00%
ELKA	₩0	0.00%	0.10%	0.23%	0.00%	0.00%
SPARCS	₩400,000	0.69%	0.72%	1.23%	0.00%	0.56%
계	₩34,800,000	60.00%				

논의안건 제2호 2023년도 하반기 기증기구회계 분배 논의안

제 출 연 월 일 2023. 8. 15.
안 건 제 출 자 부총학생회장 한정현
안건 상정 근거 「학생회칙」 제56조제6호

□ 제안이유

- 「학생회칙」 제58조제2항에 따라 중앙운영위원회에서 기구별 기증기구회계 지원을 심의하고 조정하여 기증기구회계를 배분하기 위함.

□ 주요내용

- 제2023-4회 중앙운영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기증예산심의회의 기증기구 예산 편성기준 명문화 및 ABCI 제도 도입안 수정안에 따라 기증기구회계를 분배함.
- 기증기구회계 총액의 60%는 인원 비례로 분배하고, 40%는 운영 점수 등급에 따라 분배함.
- 인원 비례
 - **(인원 기준)** 학적팀에서 제공받은 2023년도 가을학기 학사과정 학과별 재적생 수를 기준으로 함.
- 운영 점수 등급
 - **(회의 출석 점수)** 총점 10점으로, 2023년도 상반기 의결기구 출석 기록을 기준으로 함. 2021 제12차 전학대회 논의안건4 의결 결과에 따른 안건지 작성 기한 미준수를 포함함. 제2023-17회 중앙운영위원회 이후 개최되는 의결기구 출석 기록은 아직 반영하지 아니함(변경될 수 있음).
※ 뇌인지과학과 학생회 및 반도체시스템공학과 학생회는 2023. 8. 1.에 설립 인준안이 의결되었으며, 학생회장 선거 시행 전이어서 소속 중앙운영위원이 궐위이므로 회의 출석 점수 만점(10점)을 부여함.
 - **(회계감사보고서 감사 점수)** 총점 10점으로, 2022년도 하반기 회계감사보고서 감사 점수를 기준으로 함.
 - **(번역 점수)** 총점 2점으로 2022년도 가을학기 1차 보고서 및 2차 보고서 번역 점수를 기준으로 함.

□ 논의사항

- 2022년도 하반기 회계감사보고서 감사 점수가 부재한 뇌인지과학과 학생회 및 반도체시스템공학과 학생회의 점수에 대하여 중앙운영위원회 의결로 정하여야 함.
- 2022년도 가을학기 1차 보고서 및 2차 보고서 번역 점수가 부재한 뇌인지과학과 학생회 및 반도체시스템공학과 학생회 의 점수에 대하여 중앙운영위원회 의결로 정하여야 함.

□ 기증기구회계 분배안

*제2023-17회 중앙운영위원회 이후 개최되는 의결기구 출석 점수 및 지각 제출에 따른 감점 미반영

학생회비 수입	₩58,000,000
기증기구회계 비율	20.00%

인원 비례 비율	60.00%
운영 점수 등급 비율	40.00%

기층 기구	인원 비례(60%)		운영 점수 등급(40%)			지급예상액
	인원	반영 지급액	등급	반영 가중치	반영 지급액	
건설및환경공학과	39	₩52,179	A	1.5	₩309,333	₩346,000
기계공학과	204	₩272,937	B	1	₩206,222	₩468,000
기술경영학부	71	₩94,993	B	1	₩206,222	₩388,000
물리학과	131	₩175,269	A	1.5	₩309,333	₩371,000
바이오및뇌공학과	115	₩153,862	A	1.5	₩309,333	₩447,000
산업디자인학과	70	₩93,655	A	1.5	₩309,333	₩289,000
산업및시스템공학과	128	₩171,255	B	1	₩206,222	₩465,000
새내기학생회	982	₩1,313,846	B	1	₩206,222	₩1,509,000
생명과학과	126	₩168,579	B	1	₩206,222	₩462,000
생명화학공학과	154	₩206,041	A	1.5	₩309,333	₩402,000
수리과학과	231	₩309,061	B	1	₩206,222	₩602,000
신소재공학과	141	₩188,648	A	1.5	₩309,333	₩384,000
융합인재학부	31	₩41,476	B	1	₩206,222	₩237,000
원자력및양자공학과	32	₩42,814	B	1	₩206,222	₩238,000
전기및전자공학부	1084	₩1,450,314	B	1	₩206,222	₩1,646,000
전산학부	1165	₩1,558,686	A	1.5	₩309,333	₩1,852,000
항공우주공학과	101	₩135,131	A	1.5	₩309,333	₩428,000
화학과	128	₩171,255	A	1.5	₩309,333	₩465,000
합계	4933	₩6,600,000	-	22.5	₩4,640,000	₩10,999,000
배정액	-	₩6,600,000	-	-	₩4,640,000	

*천원 미만은 반올림

□ 기층예산심의회의 기층기구 예산 편성기준 명문화 및 ABCI 제도 도입안 수정안: 붙임

논의안건 제3호 격려금 제도 폐지 논의안

제 출 연 월 일 2023. 8. 15.

안 건 제 출 자 회칙개정특임위원회 위원장 한정현

안건 상정 근거 「학생회칙」 제56조제6호

□ 제안이유

- 「학생회칙」 제58조제2항에 따라 중앙운영위원회가 본회 산하기구의 사업 진행 상황을 정기적으로 보고받고 조정하기 위함.
- 「학생회칙」 제166조제3호 및 제177조 등에 따른 격려(기)금의 폐지에 관하여 중앙운영위원회에서 논의하기 위함.

□ 주요내용

- **(정의)** 격려(기)금은 본회 대표자 및 산하기구 위원을 대상으로 원활한 직무수행 및 책임감 고취를 목적으로 지급되는 기금을 말함. (「학생회칙」 제177조)
- **(역사)** 2017년도 총학생회장단 임기 종료(2017. 12. 22.) 후 발효된 「학생회칙」 및 「재정운용세칙」에 따라 격려금 제도가 시행됨.
- **(기금 운용 현황)** 「학생회칙」 제166조 및 전체학생대표자회의 의결을 통해 2023년도 상반기 격려금은 학생회비의 20%(₩11,000,000)로 운용하였으며, 2023년도 하반기 격려금은 학생회비의 20%(₩11,600,000)로 운용할 계획임. 2023년도 상반기 격려금 이월금은 ₩31임.
- **(문제 상황)**
 - 본회 대표자 및 산하기구 위원의 책임감을 고취하고자 하는 본래의 취지와 다르게, 격려금 지급 대상자를 정하는 데 많은 시간을 소모함.
 - 학생회비 납부율 감소 및 격려(기)금 재정 악화로 2018년 기준 약 ₩85,000/월 보다 적은 금액을 수령함에도 불구하고, 격려금 지급 대상자를 정하는 과정에서 더 많은 시간을 소모하는 상황이 이어짐.
 - 학생회비 납부율 감소로 중앙회계 지원 대상 기구에서 필요한 재정을 배분받기 어려운 상황임. 2023년도 상반기에도 중앙회계 지원 대상 기구의 2023년도 상반기 실행예산요구안의 총 지출이 중앙회계 보다 약 ₩7,300,000을 초과하여 여러 차례 기구별 회의를 통해 예산 지원을 조정하였음.
- **(격려금 폐지안)** 격려금 제도를 폐지하고 해당 예산을 중앙회계 지원금 등 본회 산하기구 사업 지원금으로 사용하여 본회 산하기구의 활성화를 도모할 것을 제안함.

□ 격려금 폐지안

- **(배경)** 학생회비 납부율 감소, 물가 상승, 상설위원회 등 산하기구 수익 사업 중단 등으로 본회 재정 상황이 악화되어 중앙회계 지원 대상 기구에서 필요한 재정을 배분받기 어려운 상황임. 격려금 본래의 취지와 다르게 매 학기 격려금 지급 대상자를 정하는 과정에서 많은 시간을 소모함.
- **(목적)** 원활한 직무수행 및 책임감 고취라는 본래의 취지를 달성하고 있지 못하는 격려금 제도를 폐지하고, 해당 예산을 중앙회계 지원금 등 본회 산하기구 사업 지원금으

로 사용하여 본회 산하기구의 활성화와 본회 의사결정 및 재정운용 과정에서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함.

- **(회칙개정)** 「학생회칙」 제177조부터 제180조까지의 규정 및 「재정운용세칙」 제27조부터 제29조까지의 규정을 삭제하고, 학생회칙 제165조 및 제166조의 일부를 개정하여 격려금 제도를 폐지함.

- **(경과조치)** 2023년도 하반기 학생회비 분배안 중 격려기금 비율 20%에 상당하는 금액(₩11,600,000)은 「학생회칙」 제180조제2항에 따라 기층기구회계 및 중앙회계로 전용함.

* 기층기구회계 및 중앙회계로의 전용 비율은 기층기구회계 분배안 및 중앙회계 분배안 심의 과정에서 논의할 수 있음.

- **(타임라인)**

- (2023. 9.) 전체학생대표자회의 4분기 정기회의에서 격려금 전용을 의결함. 이후 기층기구는 증액된 기층기구회계에 따라 추가로 기층기구회계 지원금을 받으며, 중앙회계 지원 대상 기구는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여 중앙회계 지원금을 받을 수 있음.

*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통해 지원받을 수 있는 금액은 학생회칙 제170조에 따라 직전 반기에 납부된 학생회비의 10%(₩5,500,000)로 제한됨.

- (2023. 10.) 학생회칙 및 재정운용세칙을 일부개정하여 격려금 관련 규정을 개정 또는 삭제함.

□ 논의사항

- 격려금 제도를 폐지하고, 격려금 지급에 사용하던 예산(학생회비의 약 20%)을 기층기구회계 지원금, 중앙회계 지원금 등으로 전용하여 본회 산하기구 사업 지원금으로 사용하는 안에 관하여 논의를 요청함.

□ 기구별 2023년도 상반기 실행예산요구안: 붙임

□ 참고사항

- 타 대학 사례

구분	격려금과 유사한 제도의 회칙상 존재 여부
서울대학교 총학생회	없음.
고려대학교 총학생회	없음.
연세대학교 총학생회	없음.
건국대학교 총학생회	없음.
한국외국어대학교 총학생회	없음.
이화여자대학교 총학생회	없음.
POSTECH 총학생회	없음.
UNIST 총학생회	없음.
충남대학교 총학생회	없음.
부산대학교 총학생회	없음.
KAIST 대학원 총학생회	없음.

*KAIST 대학원 총학생회는 학생회칙에 활동비를 규정하여 내부 기준에 따라 회장단,

집행부원, 기구장애에 활동비를 지급함.

- 학부·학과 학생회 근로장학생 등록 여부 확인 결과
 - 산업디자인학과, 생명화학공학과, 융합인재학부, 전기및전자공학부, 항공우주공학과 등의 학부·학과에서 등록 여부에 관하여 확인한 결과, 2023년도 하반기에는 학부·학과 학생회 대상 근로장학생 등록이 어려움을 확인함.
- 관련 규정

■ 학생회칙

제166조(회계 분류)

본회의 회계는 다음과 같이 분류하며 가을학기 초 정기 전학대회 및 연도말 정기 전학대회에서 다음 반기의 각 회계에 대한 분배 비율을 결정한다. 만약, 해당 분배 비율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면 이전 반기의 분배 비율을 계속하여 적용한다. 단, 학생회비가 변동되었을 경우 직후 전학대회에서 분배 비율을 조정할 수 있으며, 이는 직후 회계분기부터 적용된다.

1. 중앙회계: 총학생회의 일반 사업 및 집행기구, 동아리연합회, 전문기구, 특별기구 재정지원
2. 기층기구회계: 학부·학과 학생회 및 새내기학생회 재정지원
3. 격려기금: 회칙에 따라 정해진 본회 각 기구 선출직 및 국장 활동비 지원
4. 문화자치기금: 본회 회원의 문화 진흥을 위한 자치 사업 지원

제177조(목적)

격려기금은 본회 대표자 및 산하기구 위원을 대상으로 원활한 직무수행 및 책임감 고취를 목적으로 지급되는 기금이다.

제178조(적용범위)

격려금 지급 대상자는 다음 본회 산하기구의 기구장 및 이에 준하는 업무 책임자이다. 단, 해당 기구 활동에 대한 지원금이 없거나, 받지 못하는 경우에 한한다.

1. 집행기구
2. 자치기구
3. 전문기구

제179조(지급일)

1. 격려금은 전학대회에서 격려기금 분배안이 승인된 이후 20일 이내 본회 산하기구의 공금 계좌로 계좌 이체의 형태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본회 산하기구는 격려금 운용 계획안에 따라 격려금 지급 대상자에게 계좌 이체의 형태로 격려금을 분배한다.

제180조(기금의 전용 제한)

1. 격려금은 본회의 타 회계와 독립적으로 관리되어야 하며, 격려금 지급을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되어야 한다.
2. 격려금을 타 회계로 전용하기 위해서는 전학대회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해야 한다.
3. 본회 산하기구는 격려금을 격려금 지급을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하며, 중앙운영위원회에 격려금 운용 계획안을 제출해야 한다.

■ 재정운용세칙

제27조(적용대상)

격려금 지급 대상은 「학생회칙」 제178조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제28조(격려금 책정)

- ① 격려금의 인상·인하 등의 책정은 전학대회 의결로 결정한다. 격려금이 인상·인하되면 해당 학기 초에 공고한다.
- ② 격려금 인상·인하안의 사전공고 및 결과공고는 「학생회칙」 제186조와 제189조제1항을 준용한다.
- ③ 격려기금 분배안의 책정은 매 학기 초 전학대회 의결로 결정한다.

제29조(격려기금 관리)

1. 격려기금은 「학생회칙」 제180조에 따라 관리되며 운용의 책임은 중앙집행위원회에 있다.
2. 격려기금은 격려금 지급 인원수의 변동에 유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이월금을 둘 수 있다.
3. 중앙집행위원장은 매 학기 초 정기 전학대회에서 격려기금 이월금 현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 KAIST 대학원 총학생회 학생회칙

제56조(활동비)

1. 대학원 총학생회는 입주업체모니터링위원장에게 매달 활동비를 지급한다. 활동비의 금액은 대학원 총학생회 집행부원의 월급과 같되, 학교에서 제공되는 근로비를 제외하고 차액을 지급한다.
2. 입주업체모니터링위원회의 대표가 매월 열리는 대학원 총학생회 정기회의에 불참하였을 경우, 또는 해당 회의에 필요한 사업보고 및 계획을 제출하지 않았을 경우, 대학원 총학생회장은 대학원 총학생회에서 지급하는 본 자치단체장 활동비의 50% 이상을 삭감할 수 있다.

논의안건 제4호 의결기구 회의 출결 개선 논의안

제 출 연 월 일 2023. 8. 15.

안 건 제 출 자 부총학생회장 한정현

안건 상정 근거 「학생회칙」 제56조제6호

□ 제안이유

○ 「학생회칙」 제58조제2항에 따라 중앙운영위원회가 본회 산하기구의 사업 진행 상황을 정기적으로 보고받고 조정하기 위함.

○ 「학생회칙」 제

□ 주요내용

○ 대표자 책임 고취안: 회의 지각·조퇴·결석에 따른 사과문 게재안

- (예산조치) 없음.

- (세부내용) 본회 대표자 대상 의결기구 회의에 지각·조퇴·결석 시에는 결과공고 후 3일 이내에 중앙운영위원회에서 정한 ARA를 포함한 2개 이상의 온라인 게시판에 회의 지각·조퇴·결석에 따른 사과문을 게재함.

- (출결기준) 출결은 「의결기구운영세칙」 제7조를 따르며, 공고된 회의록상의 출결을 기준으로 함.

- (타 대학 사례) 한국외국어대학교 총학생회

○ 대표자 격려안: 의결기구 회의 수당 지급안

- (소요예산) 약 ₩9,200,000

- (예산 산정 근거) 중앙운영위원 23인 × 연간 약 22회 중앙운영위원회 정기회의 × ₩13,000 + 전체학생대표자회의 대의원 50인 × 연간 약 4회 전체학생대표자회의 정기회의 × ₩13,000 = ₩9,178,000

*서면의결은 회의 수장 지급에 포함하지 않음.

- (재원) 중앙집행위원회 자치(회계)를 재원으로 함. 취업박람회 수익금 등을 사용할 계획임.

- (세부내용)

1. 중앙운영위원회 및 전체학생대표자회의(이하 전학대회) 회의 1회 당 중앙운영위원 또는 전학대회 대의원 에게 회의 수당 ₩13,000을 지급함.

2. 지각 또는 조퇴 시 회의 수당의 반액(₩6,500)을 지급함.

3. 결석 시 미지급함. 다만, 「의결기구운영세칙」 제7조제4항에 따라 사유서를 제출하여 의장이 이를 승인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함.

4. 「의결기구운영세칙」 제21조에 따른 청가 대의원의 출결 및 제25조에 따른 청가 중앙운영위원은 대리인의 출결에 따름.

- (출결기준) 출결은 「의결기구운영세칙」 제7조를 따르며, 공고된 회의록상의 출결을 기준으로 함.

- (타 대학 사례) 없음.

- (참고 법령) 「각종 위원회 등의 참석수당 등 지급에 관한 지침」

□ 논의사항

- 대표자 책임 고취안(회의 지각·조퇴·결석에 따른 사과문 게재안) 및 대표자 격려안(의결 기구 회의 수당 지급안)에 관하여 논의를 요청함.

□ 참고사항

- 관련 규정

■ 한국외국어대학교 총학생회칙

제211조(징계)

- ① 본회의 대표자는 중앙운영위원회·전체학생대표자회의에 무단으로 불참하거나 회칙·세칙·규칙을 위반하였을 경우 다음 각 호와 같은 징계를 받는다.
 1. 회의 1회 무단 불참할 경우 사과문 게재와 다음 회의에서 공개 사과(사과문 게재 또는 공개 사과 결정에 불응할 경우 2회 무단 불참으로 인정한다)
 2. 회의 2회 무단 불참할 경우 일정 기간 자격 박탈과 자격 박탈 기간 도중 회의 의무 참관 (자격 박탈이 결정된 경우 해당 회의의 재적에서도 제하며 회의 의무 참관에 불응할 경우 3회 무단 불참으로 인정한다)
 3. 회의 3회 무단 불참할 경우 해당 연도 회의 구성원 자격 박탈(전체학생대표자회의 대의원 자격이 박탈되면 중앙운영위원 자격도 박탈된 것으로 본다)
- ② 본회의 대표자는 본 회칙을 위반하였을 경우 전체학생대표자회의의 의결을 통해 다음 각 호와 같은 징계를 받는다.
 1. 학생회 자산을 횡령할 경우 사과문 게재와 동시에 내역 공개 및 수위에 따라 징계 및 형사소송
 2. 금고 이상의 실형 선고를 받았을 경우 전체학생대표자회의 대의원 자격 박탈 (단, 해당 선고가 학생회의 정당한 권리 주장에 인한 판정일 경우 전체학생대표자회의의 의결을 통하여 대의원 자격을 박탈하지 아니할 수 있다. 고성방가·무단투기 등 도덕적으로 잘못된 행실이 발견될 경우 증인·증거 확보를 바탕으로 1회 발견될 경우 사과문 게재, 2회 발견될 경우 대의원 자격 박탈
 3. 제180조(대표자의 책임) 제6항에 해당할 경우 공식 사과문 게재 및 전체학생대표자회의 공개회의에서 공개 사과
- ③ 단과대학·독립학부 및 동아리연합회 운영위원회 회의, 단과대학·독립학부 및 동아리연합회, 학부·과 집행위원회 회의에 대한 징계는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할 수 있다.

제212조(사과문)

- ① 본 회칙, 본 회칙에 부수되는 세칙·규칙 및 세칙에 부수되는 규칙에서 명시하는 모든 사과문은 공개 게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공개 게재 게시판에 대한 규정은 따로 정한다.

- ② 제1항의 사과문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드시 포함하여야 한다.
 - 1. 사과문 게재 대상자 본인 소속 단과대학·독립학부 및 학부·과, 이름, 학번, 직위
 - 2. 사과문 게재 사유
 - 3. 사과문 내용
 - 4. 사과문 게재 일시 및 서명
- ③ 제1항의 사과문은 회칙 상 게재 의무가 발생한 시점으로부터 3일 이내에 최소 7일 이상 부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필요에 따라 사과문의 게재 기한 및 기간을 달리 할 수 있다.
- ④ 제1항의 사과문은 반드시 전지 4·6배판(788mm × 1090mm) 이상의 용지를 사용하여야 한다.

○ 2023년도 상반기 의결기구 출석 현황: 별첨
